

2018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8. 1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략기획부(감사담당)

2018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점검개요

- (목적) '기업연계형, 노인취업교육센터, 정보통계'사업추진 과정 적절성 점검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대상부서) 본원 및 6개 지역본부
(○○○○부, ○○○○부, ○○○○부, 6개 ○○본부 중심)
- (점검기간) 2018. 5. 14. ~ 2018. 7. 27.
- (대상기간) 2016. 1. 1. ~ 2018. 5. 31.
- (감사사항)
 - 예산집행과정 및 사업운영지침 준수 적절성
 - 사업운영 및 관리의 적절성
 - 운영기관 지정 및 관리의 적절성 등
- (감사방법) 서면 및 실지 감사
- (점검자) 강○○(감사부서장), 전○○(감사담당)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합계		경고	시정	개선	주의	통보	회수
건수	금액						
34	-	-	15	7	12	-	-

□ 감사결과

【번 호】 : 1

【처분종류】 : 개선

【제 목】 : 노인취업교육센터 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지적사항】

- '16년~'18년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안내에는 노인취업교육센터 참여기관 신청 심사·지정·지정취소 시 “심의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해당 사안 발생 시 우리 원 2급 이상 직원 3명 내외 및 외부 위원 2명 내외 섭외하여 심의위원 역할수행을 수행하고 있으나,
 - 그 역할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자격, 구성, 위원 수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조치할 사항】

- ▶ ○○○○부에서는, '19년도 운영안내에 “심의위원회”의 와 관련하여 자격, 구성, 위원 수,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할 것. (개선)

【번 호】 : 2

【처분종류】 : 시정, 주의(4)

【제 목】 : 노인취업교육센터 위탁관리 미흡

【지적사항】

- ○○○○부의 “2016년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기본계획(안)(“16.5.3.)”과 “2016년 「노인취업교육센터」 지정 공모 계획(안)(“16.5.3.)”, 및 “○○복지재단에서 제출한 공모 사업계획서”,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약정서” 어디에도 개발원에서 위탁받은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제3의 타 기관에 재위탁” 가능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는 ○○○○부에서 노인취업교육센터 위탁운영을 설계하면서 공모기관에서 제출한 지정 지원서와 공모 사업계획서의 유사 운영경험·강사풀·교육기자재·접근성 등 교육 인프라를 심사하여 그 조건이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위탁지정 결정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것임.
- 그리고 개발원과 ○○복지재단과의 약정서 제6조의 “①교육센터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약정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이한 조건에 대해서는 개발원과 교육센터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복지재단은 ‘16년 5월 23일 우리원으로부터 노인취업교육센터로 지정받고 ‘16년 5월 30일에 우리 원과 약정을 체결 후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교육과정개발로 “반려동물돌보미교육”을 진행하면서
- 우리원과 사전협의 및 아무런 근거 없이 경기도내 4개의 제 3의 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우리원으로부터 받은 위탁지원금을 각 2,000천원씩 총 8,000천원의 예산을 재배분하고 ‘16.6.7. ~ ‘16.11.30.까지 “반려동물돌보미교육”을 재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 이를 관리하여야 할 ○○○○지역본부와 ○○○○부에서는 ‘16년 9월 9일 ○○복지재단 현장점검(○○○○지역본부, ○○○○부)을 통하여 제3의 기관에 재위탁 및 예산 재분배 사실과 예산집행 증빙이 ○○복지재단 현장에 없고 제3의 위탁기관에서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음.

[표1] ○○복지재단 교육과정 제3기관 재위탁 현황

연번	재위탁 기관	재위탁 사업기간	과정명	재위탁 금액
1	○○노인종합복지관	2016.6. 7. ~ 11.30.	반려동물 돌보미	2,000천원
2	○○○○○시니어클럽	2016.6. 7. ~ 11.30.	반려동물 돌보미	2,000천원
3	○○시니어클럽	2016.6. 7. ~ 11.30.	반려동물 돌보미	2,000천원
4	○○○토탈서비스	2016.6. 7. ~ 11.30.	반려동물 돌보미	2,000천원

【조치할 사항】

- ▶ ○○○○부 및 ○○○○지역본부에서는 향후 당초 사업 설계의도와 벗어나 규정에 없는 재위탁과 같은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위탁기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시정)
- ▶ ○○○○부에서는 노인취업교육센터 위탁관리 미흡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 | | |
|----------------------------|-----|-------|
| • ○○○○지역본부 | 대리 | 유 ○ ○ |
| • ○○○○지역본부
(現 ○○○○지역본부) | 본부장 | 정 ○ ○ |
| • ○○○○부(現 ○○○○부) | 차장 | 고 ○ ○ |
| • ○○○○부 | 부장 | 남 ○ ○ |

【번 호】 : 3

【처분종류】 : 시정, 주의(3)

【제 목】 : 노인취업교육센터 현장점검 후속조치 미흡

【지적사항】

- ○○○○부에서는 '16년과 '17년 노인취업교육센터 현장점검에 대한 자체 계획 수립하여 '16.8.24. ~ '16.9.9.까지 6개 위탁운영 노인취업교육센터, '17.8.23. ~ '17.8.31.까지 9개 위탁운영 노인취업교육센터에 대하여 각각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음.
- '16년과 '17년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안내에 의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은 그 사안과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경고”·“약정해지”로 되어 있으나,
- ○○○○부에서는 사업안내의 조치기준에도 없는 “개선”으로 조치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업안내에 명시된 조치기준보다 낮은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음.

【표2】 2016년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교육센터명	지적사항	교육훈련부 조치	지침상 조치기준
○○도 노인취업교육센터 (○○복지재단)	- 사업 재위탁에 따른 지출 근거 등 증빙 추가 확보	개선	경고
	- 사업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추진 필요	개선	-
경기○○ 노인취업교육센터 (○○노인종합복지관)	- 민간일자리 연계율 개선 및 증빙서류(채용확인서의 근로계약기간 불명확) 관리 철저	개선	주의
	- 민간일자리 교육 확대 필요	개선	-
○○광역시 노인취업교육센터 (○○시니어클럽협회)	- 강사수당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에 따라 관리 철저	개선	주의
	- 교육센터 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 방안 마련	시정	-
○○남도 노인취업교육센터 (○○남도)	- 협약 전 선사용한 5월 경비 <u>환수 필요</u>	시정	주의
	- 강사 다양화 및 강사비 지출 기준 강화 필요(강사 소속기관으로 강사료 송금)	개선	주의
	- 교육과정 개발 추진 필요	개선	-
○부 노인취업교육센터 (주)○○○컴)	- 교육운영에 직접적 불필요 예산 집행 지양(기념품 등)	시정	주의
	- 민간일자리 연계율 개선 필요	개선	-

[표3] 2017년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교육센터명	지적사항	교육훈련부 조치	지침상 조치기준
대○ 노인취업교육센터 ((주)○콤)	(교육실적) 전산 상 취업실적증빙 추가보완 (교육운영) 강의교안 및 강사수당지급 확인관련 서류 보완	개선	시정
서○ 노인취업교육센터 (○○○비즈(주))	(교육실적) 취업확인서 내 대표자서명 누락 보완 (교육운영) 서면보고 문서 전산등록요청, 사업계획서 내 강사수행인력 수정	개선	주의
○남 노인취업교육센터 (대한노인회○○연합회)	(교육실적) 1과정 출석부와 전산 불일치 보완 (교육운영) 강의수당 원천징수 기준 확인 후 향후 준수, 원고료 지급단가 명시 및 수당지급확인서 구비	개선	주의
○산 노인취업교육센터 ((주)○○종합물류)	없음	-	-
○북 노인취업교육센터 (○○노인일자리센터)	(교육실적) 출석서명관리 및 취업증빙서류 보완	개선	주의
대○ 노인취업교육센터 ((사)○○문화교류단)	(교육운영) 교육운영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 적시	개선	-
○북 노인취업교육센터 ((주)○○○퀵)	(교육운영) 출장비 및 강사로 집행관련 내부규정 첨부, 교육운영계획서 작성, 지출결의서 내 세부 내역 제시(1결의서 1지출)	개선	주의
○주 노인취업교육센터 (○○시니어클럽)	(교육운영) 강의수당 원천징수 기준 확인 후 보완, 예금이자에 대한 수입결의서 구비	개선	시정
경기○○ 노인취업교육센터 (대한노인회 ○○ 통합취업지원센터)	(교육운영) 출장 시 차량유류비 지출에 대한 증빙 보완	개선	주의

【조치할 사항】

- ▶ ○○○○부에서는 향후 현장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기준을 준수하기를 바라며, **(시정)**
- ▶ ○○○○부에서는 노인취업교육센터 현장점검 후속조치 시 지침 상 조치 기준보다 낮게 조치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부 차장 탁 ○ ○
- ○○○○부(現 ○○○○부) 차장 고 ○ ○
- ○○○○부 부장 남 ○ ○

【번호】 : 4

【처분종류】 : 개선

【제목】 : “교육실적 현저히 미달”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지적사항】

- ‘16년~’18년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안내에 의하면 “사업계획 대비 교육운영 실적 저조 등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취업교육센터 위탁 취소 요건에 해당함.
 - 또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는 “교육 실적이 계획 대비 현저히 미달 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경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정작 “교육실적 저조와 현저히 미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위탁기관에 대한 교육실적저조에 따른 경고조치 또는 지정 취소 시 상호 주관적 해석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기준시기와 기준실적” 마련 필요.

【조치할 사항】

- ▶ ○○○○부에서는 ‘19년도 운영안내에 “사업계획 대비 교육운영 실적 저조 등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개선)

【변 호】 : 5

【처분종류】 : 시정, 주의(2)

【제 목】 : '17년 위탁 노인취업교육센터 예산 변경 승인 시기 부적절

【지적사항】

- '17년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안내에 의하면 “사업의 목적달성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단, 반드시 공문을 통한 개발원 교육훈련부의 승인 후 집행가능하다. 예산변경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 (2017.11.30.)까지 가능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부에서는 '17년 12월 이후에 신청된 5건의 예산변경 신청까지도 승인을 하는 등 예산 변경 부적절 사례 발생함.

[표4] 2017년 예산 변경 가능 시기 이후 승인 현황

연번	교육센터명	예산변경 신청일자	예산변경 승인일자	변경내역
1	(주)○콤	'17.12.17.	'17.12.19.	-과정개발비 3,860천원(증) -교육운영비 3,860천원(감)
2	(주)○○인력센터	'17.12.19.	'17.12.20.	-강의수당 1,950천원(감) -홍보인쇄비 1,960천원(증) -기타 10천원(감)
3	○○노인취업교육센터	'17.12.28.	'17.12.28.	-강의수당 등 1,307천원(증) -홍보인쇄비 등 1,307천원(감)
4	(주)○○○컴	'17.12.07.	'17.12.08.	-과정개발비 5,000천원(증) -교육운영비 5,000천원(감)
5	(주)○○○컴	'17.12.29.	'17.12.29.	-과정개발비 1,000천원(증) -교육운영비 1,000천원(감)

【조치할 사항】

- ▶ ○○○○부에서는, 향후 노인취업교육센터 위탁기관의 예산변경 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변경 시기를 준수하기 바라며, (시정)
- ▶ ○○○○부에서는 지침에 명시 된 예산변경 시기를 지난 후 승인 조치한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부 차장 탁 ○ ○
- ○○○○부 부장 남 ○ ○

【번 호】 : 6

【처분종류】 : 개선

【제 목】 : 노인취업교육센터(양꼬리라이프캠퍼스 취업형) 신규 지정 심사기준 개선

【지적사항】

- '17년 노인취업교육센터 위탁기관 지정 시 총 22개 기관이 공모 접수하여 1차 서류 및 현장 확인과 2차 최종지정심사를 거쳐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10개 기관(동점 9순위 2개 기관 포함 / 79.6점)이 선정됨.
- ○○복지재단은 '16년에 이어 '17년에도 위탁기관 지정신청 하여 심사항목에서 심사위원 평균 80.4점의 점수로 선정되고 우리원과 '17.3.30.에 약정체결 함.
- 그 후 '17.7.19. ○○복지재단은 사업량 축소와 협력기관의 사업포기를 이유로 ○○○○부에 사업포기 및 위탁기관 지정취소를 요청하였고 '17.7.21.에 ○○○○부에서는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지원금 회수 절차에 들어감.
- '16년 ○○복지재단은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시 교육과정개발로 “반려동물 돌보미교육”을 진행하면서 해당 교육과정을 우리원과의 약정체결 내용에도 없고 사전승인도 없이 제3의 4개 기관에 재위탁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하였으며,
- 취업교육과정 취업연계를 역시 47.5%로 저조한 실적이었음에도 지정심사 시 이전 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별도의 심사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17년 노인취업교육센터 위탁기관으로 재 지정됨.
- 이에 현재 위탁기관 지정 심사 시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100% 반영에서 전년 현장점검 결과의 경고 등 중대한 위반사항, 취업연계를 저조, 사업평가 점수 70점 미만 등 운영실적과 관리 실태를 반영(감점 반영 등)한 위탁기관의 종합적 운영능력을 심사할 필요성 있음.

[표5] '17년·'18년 노인취업교육센터(ELC) 위탁기관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심사 기준
기관 역량 (35점)	사업수행 역량	12점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수행인력 확보 및 전문성	8점	수행인력 및 강사 확보 수준
	교육환경 적절성	10점	교육시설 확보 및 접근성
	외부자원 활용 노력	5점	예산, 인력 계획 등
사업 계획 (40점)	사업내용의 적정성	20점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의 적정성
	사업 수행방법의 적합성	20점	교육 운영 및 평가 등
사업 효과 (25점)	교육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	15점	교육과정의 민간일자리 연계 방안
	교육생의 역량 향상	10점	교육생의 직무 역량 강화 정도

※ '18년 ELC 심사기준은 위 '17년 기준의 기관역량 항목에서 지자체 협력·지원 수준 10점 (가점) 추가

【조치할 사항】

- ▶ ○○○○부에서는,
‘19년도 운영안내에 “위탁기관 심사기준표”에 위탁기관의 전년도 운영 실적 및 주요 위반사항, 사업평가 등 관리 실태를 반영할 것. **(개선)**

【번호】 : 7

【처분종류】 : 시정

【제목】 : 교육 대상자 만 60세 미만 참여 등 교육생 관리 미흡

【지적사항】

- 「'17년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안내」의 교육생 관리에 의하면 “교육생은 만 60세 이상 대상으로 모집 및 교육운영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지역본부는 2개 교육과정에서 3명, ○○지역본부에서는 3개 교육과정에서 3명의 미자격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생관리가 미흡하였음.

[표6] '17년 노인취업교육센터 교육자격 미대상자 현황

연번	부서	교육명	교육일시	참여자 성명	참여자 생년월일	만나이
1	○○지역본부	LH꿈높이 선생님 교육	'17.5.24~5.30	이○○	57.08.26.	만59세
2		LH꿈높이 선생님 교육	'17.5.24~5.30	송○○	57.06.12.	만59세
3		어르신일자리 코디네이터 소양교육	'17.6.15~6.16	이○○	57.08.05.	만59세
4	○○지역본부	미용헤어스텝 양성과정	'17.8.7~8.11	박○○	57.11.10.	만59세
5		농산물 재배 및 품질 관리원 교육	'17.4.27.	김○○	58.12.09.	만58세
6		시니어 전통 한옥 관리원	'17.4.28.	김○○	57.08.21.	만59세

【조치할 사항】

- ▶ ○○○○지역본부 및 ○○○○지역본부에서는, 향후 교육생 자격을 철저히 준수할 것. (시정)

【번호】 : 8

【처분종류】 : 시정

【제목】 : 교육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 미흡

【지적사항】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와 제21조(기타소득)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17년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안내」의 회계 및 증빙에 의하면 “강사료,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과 인건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17년 ○○지역본부에서는 기타과정으로 “○○앤씨 교육컨설팅” 소속의 정○○ 강사로 하여금 “행복한 60+ 서비스 직종 전문 소양교육”을 참여노인 13명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서비스 및 의사소통을 주제로 교육 진행함.
- 교육 후 강사비로 4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라 강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3.3%의 원천징수액인 13,200원을 공제하고 386,800원을 지급하여야 마땅함.
- 그러나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사료 수당지급 확인서”도 미수령 하였으며, “교육서비스업”으로 “면세사업자”인 강사 소속기관 “○○앤씨 교육컨설팅”에 원천징수 없이 40만원 전액 지급함.

【조치할 사항】

- ▶ ○○○○지역본부에서는, 향후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

【번 호】 : 9

【처분종류】 : 시정

【제 목】 : 1차 차세대시스템 리뉴얼 구축사업 설계감리 시기 미흡

【지적사항】

- 2016년 (구)새누리시스템 리뉴얼 구축사업 시 (주)○○커뮤니케이션즈와 '16.10.12~17.3.31.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업에 대한 감리를 위하여 (주)○○정보기술원과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음.
- 1차 차세대시스템 리뉴얼 구축 용역업체인 (주)○○커뮤니케이션즈의 리뉴얼 작업 일정계획에 따르면 '16년 10월~11월 초순까지 업무분석, 11월 초순 ~ 12월말까지 설계, 12월말부터 '17년 3월초까지 개발, 3월초부터 3월말까지 테스트의 일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음.
- 그리고 행정안전부 고시 2017-1호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하면 감리대상 사업이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 감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구)새누리시스템에 대한 리뉴얼 사업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통하여 설계감리와 종료감리를 진행함.
- 시스템 리뉴얼 사업자는 감리업체에게 시스템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제출하고 점검을 받은 후 그 감리 점검결과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부에서는 감리시점 상 1차 리뉴얼 구축 업체에서 2개년에 걸친 계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시스템 설계가 이미 완료되고 시스템 개발이 상당부분 경과한 이후인 '17년 2월 6일에 감리업체와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설계감리는 리뉴얼 시스템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인 '17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되어
- 감리 수행업체 (주)○○정보기술원은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설계감리 시점이 개발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하나 이 단계는 시스템 설계 단계의 과업 세부항목이 과업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점검 후 시스템 구축업체에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단계로 전체 시스템 구축일정 준수와 충실한 시스템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계별 감리의 적시 시행이 필요함.

【조치할 사항】

- ▶ ○○○○부에서는,
향후 전산시스템 구축 단계에 맞춰 감리 설계감리와 종료감리가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시정)

【번호】 : 10

【처분종류】 : 시정, 주의(2)

【제목】 : 2차 감리 시 감리원 변경 절차 위반에 대한 대처 미흡

【지적사항】

- 2016년 (구)새누리시스템 리뉴얼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를 위하여 (주)○○ 정보기술원과의 감리계약서상 과업내역서에 의하면 정기감리 수행 감리원은 원칙적으로 변경을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에 투입인력변경을 요청해야 하고, 동급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감리원 변경요청 공문, 변경 요청 사유,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첨부)해야 함.
- 그리고 “감리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주)○○정보기술원에서 2차례의 감리원 변경 요청에 대한 위반이 있었음에도 ○○○○부에서는 감리기간(1차 감리기간 2017.02.20.~2017.02.24., 2차 감리기간 2017.03.20.~2017.03.24.)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표7】 2차 감리 시 감리원 변경 요청 현황

연번	감리원 성명	변경사유 발생일자	변경요청 일자	발생사유 경과일자	비고
1	유○○	‘17.8.25.	‘17.8.31.	6일	퇴직
2	이○○	‘17.11.17.	‘17.11.29.	12일	퇴직

【조치할 사항】

- ▶ ○○○○부에서는, 향후 감리계약 내용에 따라 감리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를 바라며, (시정)
- ▶ ○○○○부에서는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체의 부적절한 감리원 변경 절차에 대처하지 못한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부

차장

김 ○ ○

• ○○○○부(現 ○○○○○부)

부장

문 ○ ○

【번 호】 : 11

【처분종류】 : 주의(2), 개선(2)

【제 목】 :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및 운영관리 미흡

【지적사항】

- 2차 년도 차세대 통합업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진행하면서(‘17.7.5.~‘17.12.29.) 별도 구축 및 관리되고 있던 재능나눔 시스템을 통합업무시스템으로 시스템 및 참여자 DB를 통합 구축함.
- 이 과정에서 (구)재능나눔 시스템에서는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참여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자만 가능하도록 참여자 등록을 시스템으로 설정하여 운영되었으나, 재능나눔 시스템과 통합업무시스템의 통합 직후 ‘18년 4월 재능나눔 참여 신청자 중 사업 참여 제한 연령인 만 65세 미만자 77명이 참여 상태로 통합업무시스템에 등록됨에 따라 부적격자가 발생하여 이후 조치함.
- 이는 “2018년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모집·선발 시 참여일 기준 만 65세 미만자는 선발하지 않았어야 하나 77명이 업무시스템에 등록·선발 후 취소되었으며,
- 또한, 2차 차세대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업체인 (주)○○커뮤니케이션즈에서 재능나눔 시스템과 차세대 통합업무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연령체크 로직이 반영되지 않아 수행기관의 참여가능 연령 이하 입력과 같은 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만 65세 미만 등록이 제한되도록 업무시스템에서 참여자격 연령 제한하지 못하였음.
- 통합완료 후 시스템 테스트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이유로 시스템 개발자 테스트, 운영자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에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로(만60세 미만)만 테스트가 이루어져 참여 연령 제한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함.
- 공익형·시장형 부대비 월별 합산과 세부내역 불일치 사례로 현재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공익형·시장형 참여자의 활동비(보수)는 보수관리 메뉴에서 부대경비(사업비)는 집행예산관리 메뉴에서 각각 입력하고 있음.

- 보수관리 메뉴에서 참여자의 활동비(보수)를 입력하면 그 합산 금액을 집행예산관리 메뉴의 부대경비 세부내역에 자동 연계되어 표시됨.
- 매월 수행기관에서 차세대 시스템에 입력한 활동비(보수)와 부대경비(사업비)를 자동합산하여 월별집행금액을 산출하고 있음.
- 그러나 월 실적 마감 후 보수 관리 메뉴에서 참여자 활동비(인건비) 등을 수행기관에서 수정할 경우 집행예산관리 메뉴에서 부대비 세부내역의 인건비 항목까지는 수정된 활동비(인건비)가 반영되지만 좌측의 월별집행금액은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수행기관에서 활동비(보수) 수정 시 보수 관리 메뉴에서 수정사항을 저장 후 집행예산관리 메뉴에서 다시 한 번 저장 처리 해주어야 좌측의 월별집행금액에 반영되지만 수행기관 담당자가 해당 작업을 놓치거나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 데이터 불일치 사례가 발생함.
- 그리고 예산집행 입력 시 “활동비(보수) 입력 → 부대경비(사업비)” 순으로 입력하여야 수정사항이 월별집행금액에 반영되며, 반대의 순서인 “부대경비(사업비) → 활동비(보수)” 순으로 입력하는 경우는 월별집행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통계 데이터 불일치 사례가 발생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활동비(보수) 수정 후 화면에 수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띄워 수행기관 실무자들에게 수정 마감작업에 따른 애기치 않은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월 마감 후 지난 월의 활동비(보수) 및 부대경비를 수정하는 경우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보시스템에 “정산업무 프로세스 수립 후 신규 구축”으로 월 마감 후 데이터 수정 작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과정의 관리 강화 필요

- 전산시스템 개발의 일반적 주요 과정은 1. 사용자 기능 요구사항 정의(사용자 → 개발자) 2. 요구사항 분석(개발자) 3. 설계(개발자) 4. 개발(개발자) 5. 테스트(개발자, 감리, 사용자)의 과정으로 진행됨.
- 이 과정 중에서도 처음단계에 속하는 “사용자 기능 요구사항”은 해당 전산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시스템에 반영 하여야 할 여러 기능을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개발자에게 요구하고 전달하는 단계이며,

- 마지막단계에 속하는 “테스트”과정은 이러한 사용자의 기능개선 요구에 대하여 개발자가 설계단계를 거쳐 1차 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구 사항 구현 정도와 오류 여부 등 시스템 테스트 단계임.
- 이 두 과정은 시스템 개발 완성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 사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로 이 두 단계의 충실성이 실제 시스템 운영 단계 시점 이후 오류 발생과 불필요한 유지보수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부의 자료에 의하면 ‘17년 통합업무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시 사용자 기능 요구사항 단계에서는 사업 담당자별 2회 인터뷰하였으며, 테스트 과정에서는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이 과정을 간소화하여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이에 전산시스템 개발 시 ○○○○부에서는 각 사업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형식적 절차보다 시스템 질적인 완성도가 담보될 수 있도록 “사용자 기능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게 하고 “테스트(운영자 사용자 테스트)” 단계 역시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충실히 점검되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함.

【조치할 사항】

- ▶ ○○○○부에서는,
시스템 개발자의 참여자 중요 자격요건 체크 로직 누락과 그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부 차장 김 ○ ○
- ○○○○부(現 ○○○○○부) 부장 문 ○ ○

- ▶ ○○○○부에서는,
통합업무시스템의 월별집행금액 불일치 보완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월 마감 후 수정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을 화면에 띄워 안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산업무 프로세스 수립 후 신규 구축 등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개선)

- ▶ ○○○○부에서는,
전산시스템 신규 구축 시 시스템 완성도와 오류 최소화에 중요한 단계인 사용자 요구사항 및 테스트 과정이 치밀하고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각 사업부서와 소통 강화 및 협업을 통한 관리강화를 바랍니다. **(개선)**

【번호】 : 12

【처분종류】 : 시정

【제목】 : '기업연계형' 사업 현장점검 후속조치 미흡

【지적사항】

- '17년 실시한 각 지역본부의 기업연계형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지역본부 조치요구 사항 및 조치결과를 확인한 결과,
 -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에서는 기업연계형사업 참여기업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하면서 위반행위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 역시 참여기업으로부터 공문으로 제출받는 등 중요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하여 공식적 문서로 처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유선 또는 이메일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처리함.

【조치할 사항】

- ▶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받는 등 중요 행정 처리는 참여기업에 문서로 통보하고 제출 받는 등 현장점검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

【번 호】 : 13

【처분종류】 : 시정, 주의(11)

【제 목】 : ‘기업연계형’사업 연계기관의 참여자 연계 절차 관리 미흡

【지적사항】

- “2017년도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에 의하면 참여기업의 원활한 노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 희망 노인의 인력풀 및 채용면접을 연계해 주기 위해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연계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연계기관 희망하는 기관은 “2017년도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의 [서식 9]에 의해 기업연계형사업 연계기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은 [서식 10]에 의해 기업연계형사업 연계기관 승인 통지서로 승인하여야 연계기관 자격을 갖게 됨.
- 이후 연계기관이 참여기업에 노인을 연계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발원은 채용 연계비를 1명당 5만원 지급하여야 하나,
-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에서는 연계기관 승인일자 이전 연계기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기업연계형사업 참여 희망 노인을 해당 기업에 연계한 실적까지 일괄 소급적용하여 연계비를 지급 등 연계기관 관리 및 운영이 미흡하였음.

【표8】 연계기관 승인 이전 연계실적에 대한 연계비 지급 현황

연번	지역본부	연계기관명	연계기관 승인신청 일자	연계기관 승인일자	연계기업명	연계기관 승인전 연계인원 (연계시작)	연계기관 승인전 연계비 지급액
1	○○○○ 지역본부	-주○○○인	'17.10.17	'17.10.23.	-○○○○케터링(주)	8명(8월~10월)	450천 원
2	○○○○ 지역본부	-○○시니어클럽	'17.09.18	'17.09.22	-한○토○주○공○	14명(6월)	700천 원
3	○○○○ 지역본부	-○○광역시 ○○노인 인력개발센터	'17.04.12	'17.04.28	-주○○교통 -○○○○버스(주) -○○운수(주) -○○버스(주) -○○○○교통(합)	2명(1월) 1명(3월) 1명(1월) 1명(3월) 1명(3월)	100천 원 50천 원 50천 원 50천 원
4	○○지역 본부	-○○노인일자리센터	'17.11.17	'17.11.17	-○○○농산 -농업회사법인 ○○팍(주)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2명(3월) 1명(8월) 5명(9월) 2명(9월)	100천 원 50천 원 250천 원 100천 원
		-대한노인회 ○○시지회	'17.11.16	'17.11.17	-○○수산영어조합법인 -(주)○○○○코리아	8명(2월, 3월) 5명(9월)	400천 원 250천 원
		-대한노인회 ○○군지회	'17.11.06	'17.11.17	-○○○○○할머니고추장	13명(6월)	650천 원
		-사대한노인회 ○○도연회	'17.11.07	미승인	-○○○○이벤트 -○○키워영농조합법인	5명(5월) 8명(12월)	250천 원 400천 원

【조치할 사항】

- ▶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에서는, 연계기관 자격 승인 후 연계실적에 대하여 연계비를 지급 등 연계기관 지원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라며, **(시정)**
- ▶ ○○○○부에서는 연계기관의 참여자 연계절차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지역본부	차장	장 ○ ○
• ○○○○지역본부(現 ○○○○실)	실장	김 ○ ○
• ○○○○지역본부	주임	유 ○ ○
• ○○○○지역본부(現 ○○○○지원부)	차장	조 ○ ○
• ○○○○지역본부(現 ○○지원부)	부장	최 ○ ○
• ○○○○지역본부	주임	강 ○ ○
• ○○○○지역본부(現 ○○○가치창출팀)	부장	서 ○ ○
• ○○○○지역본부(現 ○○○○지역본부)	본부장	정 ○ ○
• ○○지역본부	대리	김 ○ ○
• ○○지역본부	대리	박 ○ ○
• ○○지역본부	본부장	남 ○ ○

【번 호】 : 14

【처분종류】 : 시정, 주의(3)

【제 목】 : ‘기업연계형’사업 연계기관 선정 관리 미흡

【지적사항】

- “2017년도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에 의하면 연계기관 희망하는 기관은 [서식 9]에 의해 기업연계형사업 연계기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 시 구비서류로 1.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 사본(원본 대조필), 2.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원본을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 ○○지역본부에서는 (사)○○노인회 ○○군지회에서 연계기관 신청 시 연계기관으로서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인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를 누락하고 신청하였음에도 심사 시 구비서류추가 확인 및 누락 증빙자료에 대한 추가 요구 과정 없이 연계기관으로 승인하였음.
 - 더욱이 (사)○○노인회 ○○도연합회에서 ‘17.11.07에 연계기관 신청을 하였음에도 ○○지역본부는 ‘18년 7월 우리원 자체종합감사에 지적 될 때까지 연계기관 자격심사 및 승인 하지 않는 등 행정관리가 소홀하였고 (사)○○노인회 ○○도연합회가 연계기관으로서 미자격 상태임에도 연계비로 650천원을 지급하는 등 연계기관 관리가 미흡하였음.

[표9] 연계기관 선정 및 관리 미흡 현황

지역본부	연계기관명	연계기관 승인신청 일자	연계기관 승인일자	연계인원 (기업수)	연계비지급	미제출 구비서류
○○지역 본부	○○노인회 ○○군지회	‘17.11.06	‘17.11.17.	13명 (1개 기업)	650천원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노인회 ○○도연합회	‘17.11.07	미승인 (‘18년 7월 종합감사 시점까지 미승인 상태)	13명 (2개 기업)	650천원	-

【조치할 사항】

- ▶ ○○지역본부에서는,
연계기관 자격심사 및 승인 등 관리에 철저히 하길 바라며, **(시정)**

- ▶ ○○○○부에서는
연계기관 자격심사 및 승인 등 관리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 | | |
|----------|-----|-------|
| · ○○지역본부 | 대리 | 김 ○ ○ |
| · ○○지역본부 | 대리 | 박 ○ ○ |
| · ○○지역본부 | 본부장 | 남 ○ ○ |

【번 호】 : 15

【처분종류】 : 시정, 주의(2)

【제 목】 : ‘기업연계형’사업 참여기업 자격요건 부적정

【지적사항】

- “2017년도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에 의하면 참여기업 자격 요건을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법인(영리 및 비영리)과 그 수행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시 참여희망기업의 제출서류로 “[서식 1] 기업 연계형사업 참여기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로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지역본부에서는 심사 시 참여희망기업이 제출하는 “기업연계형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참여조건에 부합해야만 참여기업으로 승인하여야 함.
- 그러나 ○○지역본부에서는 7개 기업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미가입 사업장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참여기업으로 승인·선정하였음.
- 또한 그 중 6개 기업에 대하여는 참여기업 신청 시 구비서류로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받고 참여 적합 기업인가를 심사하여야 하지만 참여 기업 신청 및 승인까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참여기업 신청일로부터 짧게는 38일, 길게는 128일이 지나서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받는 등 참여기업 선정에 따른 자격요건 관리가 부적정 하였음.

[표10] 참여기업 자격요건 중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현황

지역본부	참여 기업명	참여기업 신청일자	참여기업 계약일자	사업장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발급일자	참여 인원수	지원금 정산액	미가입 4대 보험 현황
○○ 지역본부	○○○○ 이벤트	‘17.04.20	‘17.04.26	‘17.04.20	5명	14,017천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 미술학원	‘17.07.01	‘17.07.12	‘17.08.18	1명	1,500천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Q 미술학원	‘17.07.03	‘17.07.12	‘17.08.10	1명	1,500천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미술학원	‘17.07.03	‘17.07.12	‘17.08.24	1명	1,500천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 피아노학원	‘17.07.06	‘17.07.12	‘17.08.28	1명	1,500천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태권도장	‘17.08.01	‘17.08.21	‘17.08.31	2명	3,000천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태권도장	‘17.08.01	‘17.08.21	‘17.12.07	1명	2,000천원	-국민건강보험

【조치할 사항】

- ▶ ○○지역본부에서는,
기업연계형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참여 신청 시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여부 등 자격심사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자격조건이 부합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참여기업 관리와 참여자 보호에 철저를 바라며, **(시정)**
- ▶ ○○○○부에서는,
참여기업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 승인처리 하는 등 참여 기업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지역본부 대리 김 ○ ○
- ○○지역본부 본부장 남 ○ ○

【번호】 : 16

【처분종류】 : 시정, 주의(5)

【제목】 : 사업 착수 시기 30일 이상 지연한 기업에 대한 관리 미흡

【지적사항】

○ “2017년도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에 의하면 참여기업과의 계약해지 사유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착수 시기가 30일 이상 지연되거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본부 관리 기업인 (주)○○고속관광, ○○투어(주), (주)○○관광 등 3개 기업과 ○○○○지역본부 관리기업인 ○○제어시스콘 등 5개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착수(채용공고, 사업홍보, 환경조성 등) 시기가 30일 이상 지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참여기업 관리가 미흡하였음.

[표11] 사업 착수 시기 30일 이상 지연 기업현황

지역본부	참여기업명	사업계획서 착수시기	실제 사업 착수 시기	지연기간	조치사항	비고 (계약일)
○○ 지역본부	(주)○○고속관광	'17.05.1	'17.07.03	63일	미조치	'17.05.23
	○○투어(주)	'17.05.1	'17.07.04	64일	미조치	'17.05.23
	(주)○○관광	'17.06.1	'17.09.01	92일	미조치	'17.06.02
○○○○ 지역본부	○○제어시스콘	'17.01.01	'17.05.10	129일	미조치	'17.03.13
	○○운수(주)	'17.01.01	'17.06.30	180일	미조치	'17.08.08
	○○○교통합자회사	'17.01.01	'17.07.14	194일	미조치	'17.08.08
	(주)○○교통	'17.01.01	'17.05.08	127일	미조치	'17.08.08
	○○버스	'17.01.01	'17.09.11	253일	미조치	'17.08.08

【조치할 사항】

- ▶ ○○○○지역본부 및 ○○지역본부에서는,
참여기업의 참여자 채용공고, 사업홍보, 환경조성 등 사업이 조기에 진행
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 관리에 철저를 바라며, **(시정)**
- ▶ ○○○○부에서는,
참여기업 사업 착수 시기 지연한 기업 관리에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 | | |
|------------------------|-----|-------|
| • ○○○○지역본부(現 ○○○○지역본부) | 대리 | 성 ○ ○ |
| • ○○○○지역본부(現 ○○○가치창출팀) | 부장 | 서 ○ ○ |
| • ○○○○지역본부(現 ○○○○지역본부) | 본부장 | 정 ○ ○ |
| • ○○지역본부 | 대리 | 이 ○ ○ |
| • ○○지역본부(現 ○○○○지역본부) | 차장 | 이 ○ ○ |

【번호】 : 17

【처분종류】 : 개선

【제목】 : 현장점검 실시 기간 기준 적정성

【지적사항】

- “2018년도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에 의하면 “개발원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지역본부와 ○○지역본부의 경우 참여기업수가 60개 이상이나 되었고 더구나 4분기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불과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연 2회 이상의 현장점검은 해당 기업에 대한 피로도와 지역본부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현실성이 다소 부족함.
- 이에 현장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에서 참여기업 지원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실시로 개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조치할 사항】

- ▶ ○○○○부에서는,
현장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에서 참여기업 지원 계약기간 중 2회 이상으로 개정할 것. (개선)

【번호】 : 18

【처분종류】 : 시정, 주의(2)

【제목】 : 기업연계형사업 참여기업 현장점검 사항 소홀

【지적사항】

- “2017년도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의 “개발원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계획에 의하여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본부의 참여기업 현장점검 기간인 ‘17년 10월 17일에 (주)○○○ 아이씨를 점검하면서 ‘17년 1월~5월 사이의 고용인원이 7명으로 계획 고용 인원 40명의 17.5%에 불과하였고 더구나 사업종료 2달여 전임에도 ‘17년 5월 이후 신규 고용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 실적이 전무하였음.
- 그럼에도 현장점검 시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 점검표” 사업관리 부분의 “사업계획(사업운영 기간, 사업목표, 사업내용 등)의 충실성” 항목에 대하여 “정상”으로 처리하였음.
- 그 후 ○○○○지역본부는 현장점검 불과 약 2개월 뒤인 ‘17년 12월 26일 (사업종료 3일 전)에 뒤늦게 고용실적 부진의 이유로 (주)○○○아이씨와 지원 계약을 해지하는 등 참여기업 관리와 현장점검 조치가 미흡하였음.

【조치할 사항】

- ▶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점검 시 현장점검표에 따라 사실과 같게 조치기준 적용하고 참여기업 관리와 현장점검 업무에 철저를 바라며, (시정)
- ▶ ○○○○부에서는,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지역본부(現 ○○○○지역본부) 대리 성 ○ ○
- ○○○○지역본부(現 ○○○○지역본부) 본부장 정 ○ ○

【번 호】 : 19

【처분종류】 : 시정, 주의(3)

【제 목】 :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과정 부적정

【지적사항】

- “2017년도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의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에 의하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서식 2]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사업계획서에는 참여기업이 예정하는 노인 고용인원 목표, 근로계약서[서식 18]에 의한 근로계약기간 및 월 근무시간, 참여자의 직무,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금액과 사용용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참여기업 선정은 심사기준으로 “사업의 적절성, 참여기업의 자격요건, 참여자 수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선정방법으로 “개발원 지역본부에서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선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업 운영안내”에는 참여기업이 사업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발원 지역본부는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사업 지원 계약서[서식 8]을 체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업 운영안내”의 “지원금 지급”부분에 의하면 “(사전지급) 사업 지원 계약 체결 및 지원금 100%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고 이를 개발원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본부에서는 ○○종합물류가 ‘17년 11월 10일 참여기업 희망하며 제출한 서류 중 “기업연계형사업 참여기업 신청서”가 “미제출” 되었고 사업계획서 역시 지원 금액의 토대가 되는 “참여자 창출계획(고용인원, 임금수준, 근로계약기간 등)” 등이 누락되어 있었고 희망 사업기간이 ‘17.11. ~ ‘18.1.까지로 3개월에 불과하였음.
 - 그리고 ○○○○○○지역본부에서는 ○○종합물류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참여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심사 시 “기업연계형사업 참여기업 검토서”에

- 적시된 지원금사용용도, 지원신청내용(채용계획, 지원요청총액, 1인당 월평균 근무 시간, 1인평균임금, 1인평균 근로계약 기간, 참여자 직무), 지원금 사전 또는 사후 지급 여부, 사업개요,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하나,
- ○○종합물류에서 “기업연계형사업 참여기업 신청서”를 “미제출”한 상태에서 “참여자 창출 계획”이 누락된 사업계획서 만으로 사업을 승인하였음.
 - 또한 ○○종합물류와 “기업연계형사업 지원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보조금 사전교부 과정에서 채권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며 전제 요건인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에 “미가입”하고 개발원에 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 ‘17년 11월 16일 ○○종합물류 측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해 다음날인 ‘17년 11월 17일에 사전지급으로 50,000천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 등 ○○종합물류의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참여기업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의 중요한 절차 누락 및 미준수 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됨.

[표12] ○○종합물류 참여기업 최초 선정 및 지원금 사전지급 과정 현황

참여 기업명	사업 계획서 제출일	사업 계획서 승인일	보조금 교부 신청일	보조금 교부일	사전 지급액 (천원)	사업 계획서 누락 내용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기업)	참여기업 검토서 (개발원)	지원 계약서 체결 (개발원)	이행보증 보험증권 (참여기업)
○○ 종합물류	‘17.11.10	‘17.11.13	‘17.11.16	‘17.11.17	50,000	참여자 창출 계획	미제출	누락	미체결	미가입 (미제출)

【조치할 사항】

- ▶ ○○○○○○지역본부에서는,
기업연계형사업 심사 및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 제반 규정 준수에 철저를 바라며, (시정)
- ▶ ○○○○부에서는,
기업연계형사업 심사 및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의 제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 | | |
|---------------------------|-----|-------|
| • ○○○○○○○지역본부 | 주 임 | 엄 ○ ○ |
| • ○○○○○○○지역본부 | 차장 | 김 ○ ○ |
| • ○○○○○○○지역본부(現 ○○○○지역본부) | 본부장 | 장 ○ ○ |

【번호】 : 20

【처분종류】 : 시정, 주의(3)

【제목】 : 지원 계약체결 이전 고용인원에 대한 실적 산입 부적정

【지적사항】

○ “2017년도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에 사업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을 명시하고 있고 고용인원 실적 역시 개발원과 참여기업이 지원 계약체결 후 기업연계형사업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득하고 이후 사업시행을 통하여 발생한 고용에 대해 실적으로 산입하여야 하지만

- ○○○○지역본부 관리기업인 ○○그룹 소속 운수회사 11개사와 ○○버스 등 12개 기업은 각각 '17년 7월 17일에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버스주) '17.8.1. 신청)하고 '17년 8월 9일에 '지원 계약체결' 하였음에도 '17년 1월에서 7월 사이의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 기업 활동으로 고용한 39명에 대하여 일괄 소급하여 고용 실적으로 산입하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또한, '3.3○○사업회'는 강원○○ 협력사업을 수행하면서 '17년 4월 17일에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하고 '17년 8월 22일에 “지원 계약체결” 하였고,
'17년 3월 고용자 56명, 4월 고용자 3명, 5월 고용자 1명, 7월 고용자 1명 등 전체 고용인원 63명 가운데 61명에 대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지원 계약체결” 이전의 자체적 강원○○ 협력사업 활동에 의한 고용인원까지 일괄 소급하여 실적으로 산입하고 그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함.

[표13] 계약체결 이전 고용인원에 대한 실적 산입 및 지원금 지급 현황

지역본부	참여 기업명	사업 신청서 제출일	참여기업 검토 및 승인일	지원 계약서 체결일	총 채용인원 (계약체결 이전·이후)	계약체결 이전 채용인원 실적산입	계약체결 이후 채용인원	계약체결 이전 채용지원금 (천원)
○○○○ 지역본부	(주)○○교통 (○○그룹)	'17.07.17	'17.08.08	'17.08.09	3	<u>3</u>	0	<u>6,000</u>
	○○○○버스(주) (○○그룹)	'17.07.17	'17.08.08	'17.08.09	3	<u>3</u>	0	<u>6,000</u>
	○○운수(주) (○○그룹)	'17.07.17	'17.08.08	'17.08.09	2	<u>1</u>	1	<u>2,000</u>
	○○운수(주) (○○그룹)	'17.07.17	'17.08.08	'17.08.09	3	<u>1</u>	2	<u>2,000</u>
	○○여객(주) (선진그룹)	'17.07.17	'17.08.08	'17.08.09	1	<u>1</u>	0	<u>2,000</u>
	○○버스(주) (○○그룹)	'17.08.01	'17.08.08	'17.08.09	3	<u>3</u>	0	<u>6,000</u>
	○○ 시내버스(주) (○○그룹)	'17.07.17	'17.08.08	'17.08.09	1	<u>1</u>	0	<u>2,000</u>
	○○여객 (○○그룹)	'17.07.17	'17.08.08	'17.08.09	1	<u>1</u>	0	<u>2,000</u>
	○○교통(합) ○○동지점 (○○그룹)	'17.07.17	'17.08.08	'17.08.09	1	<u>1</u>	0	<u>2,000</u>
	○○교통합자 회사 (○○그룹)	'17.07.17	'17.08.08	'17.08.09	1	<u>1</u>	0	<u>2,000</u>
	(주)○○교통 (○○그룹)	'17.07.17	'17.08.08	'17.08.09	7	<u>4</u>	3	<u>8,000</u>
	○○버스	'17.07.17	'17.08.08	'17.08.09	10	<u>9</u>	1	<u>18,000</u>
	3.3○○사업회	'17.04.17	'17.08.22	'17.08.22	63	<u>61</u>	2	<u>84,121</u>

【조치할 사항】

- ▶ ○○○○지역본부에서는, 참여기업의 고용실적 산입과 그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그 기준 적용을 지원계약 이후로 하는 등 실적관리를 철저를 바라며, **(시정)**
- ▶ ○○○○부에서는, 기업연계형사업 지원 계약체결 이전의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고용실적을 일괄 소급하여 산입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지역본부(現 ○○○○지역본부) 대리 성 ○ ○
- ○○○○지역본부(現 ○○○○○○○○팀) 부장 서 ○ ○
- ○○○○지역본부(現 ○○○○지역본부) 본부장 정 ○ ○

【번 호】 : 21

【처분종류】 : 개선

【제 목】 : 참여 노인 근로자 고용기간의 적정성 미흡

【지적사항】

- “2017년도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의 “지원한도 및 지원내역”에서 “지원한도” 부분을 보면 “사업계획서 상 승인된 일자리 1개당 200만원 지원(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되어 있고 “참여기업 모집 시 노인 근로자에 대해 1년 이상 장기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개발원에서 참여기업 모집 단계에서부터 업종·직무·기업CEO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접근하여 참여 노인이 장기고용 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발생과 지속적인 취업상태 유지에 기업연계형 사업 주요 정책임을 뜻함.
- ○○○○지역본부에서의 관리기업인 ○○제어시스콘은 LH아파트 무인택배함 관리원 사업으로 노인 채용인원 50명, 사전지급 135,000천원의 내용으로 사업기간을 ‘17년 12월 29일까지로 경기인천지역본부와 ‘17년 3월 13일 지원 계약 체결 함.
- ○○제어시스콘의 노인 채용 현황을 보면 ‘17년 5월 5명, 6월 7명, 7월 1명, 8월 3명, 9월 4명, 10월 2명, 11월 27명, 12월 1명 등 계획된 고용인원 50명을 모두 채용하고 총급여로 131,187천원을 지급하였음.
- 그러나 고용내용을 보면 사업기간 만료 불과 2개월 전인 11월에 전체 채용 계획인원의 54%에 해당하는 27명과 한꺼번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기간 만료 당월인 12월에는 1명과 고용계약을 체결함.
- 더욱이 [표14]와 같이 이들 채용노인 대부분과의 고용계약서상 고용기간은 12개월로 명기하였으나 실제 고용기간은 상당수의 노인이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지나지 않음.
- 그리고 이들의 고용계약서 대로라면 50명 중 49명은 모두 2018년 중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2018년에 고용상태 유지자는 25명 이었으나, 이 중 24명은 ‘18년 1월에 1명은 ‘18년 2월에 고용이 종료되고 ‘18년 3월 이후 고용 유지가 없었음.

- 이후 ○○제어시스템은 '18년 기업연계형사업에 재참여하기 위해 ○○○○ 지역본부와 '18년 3월 13일 지원 계약체결하고 사업기간 '18년 3월 13일 ~ '19년 2월 28일에 고용 계획인원 '17년 보다 2배 이상 늘린 107명으로 214,000천원을 사전지급 받고 '18년 기업연계형사업에 재참여 중임.
- ○○제어시스템과 같이 우리원에서 지급한 기업지원비와 비슷한 규모 또는 조금 상회하는 규모에 맞춰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을 맞춘 후 지원금을 받고 더 이상의 추가 고용 없이 당해 사업은 종료 후 익년도 사업에 재참여하여 새로이 기업지원비를 지원받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음.
- 그리고 ○○○○부의 2017년 기업연계형사업 계속고용여부 실태조사 결과보고 (○○○○부-1309(2018.09.12))에 의하면 '17년 채용된 총참여노인 3,342명의 기업 연계형사업 실참여개월수(급여를 받은 실제 고용기간)는 1개월~3개월의 단기 고용자가 전체의 4/1 가량인 23.4%, 4개월 고용자가 가장 높은 비중인 22.3%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고용자의 실제 고용유지기간은 평균 5.9개월 (2018.7.17. 기준) 이었고 참여기간별 참여자 현황은 아래 [표15]와 같음.

[표14] '17년 ○○제어시스템(○○○○지역본부) 참여자 채용(50명) 현황

구분	'17년5월	'17년6월	'17년7월	'17년8월	'17년9월	'17년10월	'17년11월	'17년12월
사업기간	'17.1.1 ~ '17.12.29.(실제 채용 유지기간 : '17.5 ~ '18.2)							
채용인원	5명	7명	1명	3명	4명	2명	27명	1명
고용 계약서상 채용기간	7개월20일-1명 12개월 - 4명	12개월-7명	12개월-1명	12개월-3명	12개월-4명	12개월-2명	8개월-27명	8개월-1명
실제 채용기간	8개월-3명 9개월-2명	7개월-7명	6개월-1명	5개월-3명	4개월-4명	2개월-1명 5개월-1명	2개월-6명 3개월-21명	2개월-1명
2018년 채용유지	1개월-2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개월-1명	1개월-21명	1개월-1명
총급여 지급액	131,187천원(개발원 지원금 : 135,000천원)							

[표15] 2017년 총참여노인(3,342명)의 실참여기간별 참여자 수(비율) 현황

구분	실참여기간별 참여자 수(명)												
	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이상
3,342명	416명 (7.5%)	220명 (7.5%)	220명 (7.5%)	246명 (8.4%)	682명 (22.3%)	192명 (6.6%)	167명 (5.7%)	206명 (7.0%)	212명 (7.3%)	134명 (4.6%)	138명 (4.7%)	121명 (4.1%)	388명 (13.3%)

* 3,342명 중 지원 계약해지 기업 참여자 416명 등은 참여기간에서 제외

** 2018.7.17. 기준

【조치할 사항】

- ▶ ○○○○부에서는,
기업연계형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이 기업지원금 규모에 맞춰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가 지양되고,
참여하는 노인이 장기 고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유인책 등 보완할 것. (개선)